

1. 개정이유

제3국으로 보내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우회덤핑 제도는 우회덤핑 행위로 “경미한 변경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회덤핑 행위로 추가된 “제3국 조립·완성”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음.

우회덤핑 제도의 명확화를 위해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공정의 성격 및 소요되는 비용, 투입된 생산설비 등의 투자 수준, 덤핑물품 공급국의 부품·원재료 비중 또는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중 및 덤핑조사 전후의 덤핑물품이나 관련 부품 또는 원재료 등의 교역 변화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 10. 17. ~ 11.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을 “(우회덤핑 행위의 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제3국 조립 또는 완성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3국 조립 또는 완성 공정의 성격 및 해당 공정에 소요되는 비용
2. 제3국 조립 또는 완성에 투입된 생산 설비 등 투자의 수준
3. 제3국 조립 또는 완성에 사용된 덤핑방지관세물품 공급국의 부품 또는 원재료의 비중 및 제3국 조립 또는 완성으로 발생한 부가가치 비중
4. 덤핑방지관세물품 조사개시 전·후 해당 물품과 관련한 부품 또는 원재료 등의 교역 변화
5.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 (생략)	제20조의2(우회덤핑 행위의 판단)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제3국 조립 또는 완성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제3국 조립 또는 완성 공정의 성격 및 해당 공정에 소요되는 비용 - 제3국 조립 또는 완성에 투입된 생산 설비 등 투자의 수준 - 제3국 조립 또는 완성에 사용된 덤핑방지관세물품 공급국의 부품 또는 원재료의 비중 및 제3국 조립 또는 완성으로 발생한 부가가치 비중 - 덤핑방지관세물품 조사개시 전·후 해당 물품과 관련한 부품 또는 원재료 등의 교역 변화 -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